(재)광산장학회 공고 제2025-4호

# 2025년도 (재)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

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「2025년도 (재)광산장학회 장학생」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12일

**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**

## Ⅰ. 선발개요

**가. 선발인원 : 145명(예정)**

(단위 : 명)

| 구 분 | | 계 | 학교밖청소년 | 중·고 | 전문대 | 종합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| **145** | **10** | **5** | **25** | **105** |
| 우수장학생 | | **36** | - | - | 6 | 30 |
| 일반장학생 | | **68** | - | - | 8 | 60 |
| 특정 장학생 | 다자녀 | **10** | - | - | 5 | 5 |
| | 다문화 | **8** | - | - | 3 | 5 |
| | 북한이탈 | **8** | - | - | 3 | 5 |
| 특기장학생 | | **5** | - | 5 | - | - |
| 학교밖청소년장학생 | | **10** | 10 | - | - | - |

**나. 장 학 금 : 중·고생·학교밖청소년 50만원, 전문대 150만원, 종합대 200만원**

**다. 선발절차**

- o **선발공고 및 신청접수(접수기간 연장) : 8. 25. ~ 9. 19. (26일간)**
- o 장학생 선발 심사 : 9. 20. ~ 10. 24. (35일간)
- o 심사위원회 개최 : 10. 27. (예정)
- o 이사회 의결 : 11. 7. (예정)
- o 최종 선정 발표 : 11. 17. (예정)
- o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: 11. 20. (예정)
- o 장학금 지급 : 11. 28. (한)

※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(개별통보X)

## Ⅱ. 장학금 신청

**가. 신청접수**

- o 기 간 : **'25. 8. 25. ~ 9. 19.(26일간) ※ 접수기간 연장**
- o 신청방법 : **방문 혹은 우편접수**
  - 방문접수 : 평일 9:00 ~ 18:00(점심시간 12:00 ~ 13:00, 주말 제외)
  - 우편접수 : 9월 19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

※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,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

- o 신 청 서 : 광산구청 홈페이지(www.gwangsan.go.kr)

※ 광산구 소개 - 광산장학회 - 장학회소식 - 공지사항

- o 접 수 처 : (재)광산장학회 사무국 (☎960-7926)
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산구청 6층

**나. 신청자격**

- o 지원자격 : 공고일('25.8.25.) 기준 **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**하고 있는 주민 혹은 그 자녀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

**다. 신청요건**

**【우수장학생】**

-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.5점(4.5점 만점 기준)이상
- 대학수학능력평가(혹은 고교성적) 전 과목 평균 2등급 이내

*** 타 장학금 중복 시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**

**【일반장학생】**

-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.0점(4.5점 만점 기준)이상
- 대학수학능력평가(혹은 고교성적)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
- 신청자 **직계가족** 국민건강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%이내인 가구 **(납입기간 : '25년 1월 ~ 8월)**

***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**

**【특정장학생】**

① 다자녀가정 장학생

-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.0점(4.5점 만점 기준)이상
- 대학수학능력평가(혹은 고교성적)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
- **학생 자녀가 3명 이상**인 가정의 학생(형제자매 재학증명서로 증명)

② 다문화가정 장학생
-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.0점(4.5점 만점 기준)이상
- 대학수학능력평가(혹은 고교성적)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
-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

③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
-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.0점(4.5점 만점 기준)이상
- 대학수학능력평가(혹은 고교성적)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
-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의 학생

***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**

**【특기장학생】**
-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('24.8.25.~'25.8.25.)에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
- 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
- 신청자 **직계가족** 국민건강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%이내인 가구 **(납입기간 : '25년 1월 ~ 8월)**

***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**

**【학교밖청소년장학생】**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
- '24~'25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
- 신청자 **직계가족** 국민건강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%이내인 가구 **(납입기간 : '25년 1월 ~ 8월)**

***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**

**라. 제외대상**
o 대학생 중 2025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 혹은 2025년 2학기 기준 11학점 이하 이수자
o 대학생 중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실납부액이 50만원 이하인 자
o 우수장학생 중 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자
o 2025년 1월 ~ 8월내 (재)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자

## Ⅲ. 선발기준

가. 우수장학생 : **성적 100(대학 70 + 수능 혹은 고교 30)**
나. 일반장학생 : **성적 50(대학 40 + 수능 혹은 고교 10) + 소득 50**
다. 특정장학생 : **성적 50(대학 40 + 수능 혹은 고교 10) + 특정 50**
- 다자녀가정 : 자녀수 순 (대학생자녀수>자녀수)
- 다문화·북한이탈주민가정 :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

라. 특기장학생 : **특기 60 + 성적(중·고교) 30 + 소득 10**
마. 학교밖청소년장학생 : **성적(검정고시) 50 + 소득 50**
**바. 기타 고려사항**
-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('24.8.25.~'25.8.25.)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: 본인명 1구좌(5만원)당 0.3점(가점)
  *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.
- 2025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: 선발 1회당 3점(감점)
- 가·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
- **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**

  ⇒ **성적(대학)우수자 > 건강보험료 납부액 > 저학년 > 연소자 > 접수일시 순**

  ⇒ **검정고시 점수 > 건강보험료 납부액 > 연소자 > 접수일시 순 (학교밖청소년에 한함)**

## Ⅳ. 참고사항

o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
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**o 제출서류는 공고일('25.8.25.)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**
o 서류착오 제출(누락)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,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
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o 기타문의 : (재)광산장학회 사무국(☎062-960-7926)

## 붙임 1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

### 제 출 서 류 목 록

1.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[별지1]
2. 광산구 거주중인 직계가족(혹은 본인)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각 1부
   - 세대원의 전입일 /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(변동일·변동사유) 포함 발급
   - 부·모·학생 중 광산구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명의로 제출
  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
3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 - 미혼 : 부·모 명의 발급 / 기혼 :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
  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
4.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고교성적증명서 중 택일하여 1부
5. 대학교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1부
6. 재학증명서 1부
7.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붙임 3 참고)
   - 2025년도, 직계가족(부·모 또는 배우자)포함
   - 부·모가 맞벌이일 경우 부·모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
   - 부·모가 가족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실제 납부자의 명의로 제출
   - 기혼자의 경우 본인·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
8.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9.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
10. 2025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확인서 혹은 비수혜확인서 1부
    - 장학금 수혜받았을 시 장학금명 기재 필수
    -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[별지2]를 작성하여 제출(직인 필수)
11. 수상실적증명 자료 (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)
12. 학교장 추천서 1부
    -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[별지3]를 작성하여 제출(직인 필수)
13. 외국인 확인서류 1부
    -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/ 귀화 시 : 기본증명서
14.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
15. 2024~2025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
16. 제적증명서 1부
1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[별지4]
18. 신청인 서약서 1부 [별지5]
19.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
    - 미성년자는 부·모 통장, 대학생은 본인 통장 제출

□ 제출서류

| 선발분야 | | 공통제출서류 번호 | 분야별 제출서류 번호 |
|---|---|---|---|
| 우수(대학생) | | 1, 2, 3, 17, 19 | 4, 5, 6, 9, 10, 18 |
| 일반(대학생) | | | 4, 5, 6, 7(혹은 8), 9 |
| 특정 (대학생) | 다자녀 | | 4, 5, 6, 9, 형제·자매의 재학증명서 |
| | 다문화 | | 4, 5, 6, 9, 13 |
| | 북한이탈주민 | | 4, 5, 6, 9, 14 |
| 특기(중·고교생) | | | 6, 7(혹은 8), 11, 12, 중고교성적증명서 |
| 학교밖청소년 | | | 7(혹은 8), 15, 16 |

※ **제출서류 목록의 서류 번호 확인하여 구비**

□ 발급방법

| 발급기관 | 서 류 종 류 | 발급방법 |
|---|---|---|
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| - 주민등록등본 (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)<br>- 주민등록초본 (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)<br>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- 부· 모 기준<br>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<br>- 기본증명서 (특정장학생 : 다문화)<br>- 외국인등록증 (특정장학생 : 다문화)<br>- 북한이탈주민확인서 (특정장학생 : 북한이탈가정)<br>-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(학교밖청소년) | 정부24,<br>읍·면·동<br>행정복지센터<br>방문 |
| 해당학교 | - 성적증명서(전체학기)<br>※ 중·고등 성적증명의 경우 2003년 1월 이전 졸업생은 온라인 발급 불가<br>- 재학증명서<br>- 등록금납입증명서 (2025년 2학기)<br>- 장학금 수혜확인서-장학금명 기재 (2025년 2학기)<br>- 장학금 비수혜확인서 (2025년 2학기)<br>- 제적증명서 (학교밖청소년) | 정부24,<br>학교홈페이지,<br>해당학교방문 |
| 건강보험공단 | -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(2025년도 1월 ~ 8월)<br>**※ 건강보험공단 1577-1000** | 온라인,<br>건강보험공단방문,<br>팩스 |
| 한국교육과정평가원 | -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| 홈페이지 |

※ **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공고일**('25.8.25.) **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**

## 붙임 2 자주하는 질문 (FAQ)

Q1.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**타 장학금 수혜자**입니다. 2025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1. 우수 장학생 장학금은 타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 시 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. 단, 그 외의 장학생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발됩니다.

Q2. 성적 **자격요건 모두 충족**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2.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신청 가능하나 심사 시에는 **대학성적과 수능성적 모두 반영**합니다.

Q3. 학생은 타 지역, **부모님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** 제출 서류는?

A3. (재)광산장학회에서는 광산구에 현재 거주중이며,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합니다.
학생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부모님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, 이 때에는 **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와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5년)**을 함께 제출바랍니다.

Q4. 서류는 **사본을 제출**해도 되나요?

A4.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,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.

Q5. **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 명**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5. (재)광산장학회에서는 더 많은 주민에 장학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**1세대 1인에 한하여** 장학생을 선발합니다.

Q6. 부모님께서(또는 본인이) **광산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**한 적이 있습니다. 출연자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?

A6.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하였을 시, 본인 명의 1구좌(5만원)당 **0.3점 가점**이 있습니다. 가족 명의로 출연하였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입금내역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.

## 붙임 3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

o 기준중위소득 100% 산정값

*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(기간: 2025. 1월 ~ 8월 / 단위 : 원)
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
| 1인 | 2,393,000 | 85,040 | 19,780 | - |
| 2인 | 3,933,000 | 139,817 | 70,053 | 141,260 |
| 3인 | 5,026,000 | 179,415 | 121,707 | 181,663 |
| 4인 | 6,098,000 | 219,196 | 154,802 | 222,471 |
| 5인 | 7,109,000 | 252,203 | 196,416 | 256,716 |
| 6인 | 8,065,000 | 288,617 | 243,019 | 295,134 |
| 7인 | 8,989,000 | 320,322 | 280,625 | 330,765 |
| 8인 | 9,913,000 | 354,964 | 320,449 | 369,517 |
| 9인 | 10,836,000 | 386,684 | 354,963 | 407,092 |
| 10인 | 11,760,000 | 431,294 | 411,250 | 461,699 |

* 출처 : 보건복지부

**[별지 1]**

# (재)광산장학회 장학생 지원 신청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**지원 분야** | ☐ 우수장학생 (☐ 종합대 ☐ 전문대) ☐ 일반장학생 (☐ 종합대 ☐ 전문대)<br>☐ 특정장학생 (☐ 종합대 ☐ 전문대) (☐다자녀 ☐다문화 ☐북한이탈가정)<br>☐ 특기장학생 ☐ 학교밖청소년장학생 *** □안에 체크(√) 바랍니다** | | | |
| **신청자 정보** | **성 명** | | **성 별** | |
| | **연 락 처** | * 연락 가능 번호 기재 | **주민등록 번 호** | * 한국장학재단 제출에 필요(필수) |
| | **주 소** | (우편번호: ) * 도로명주소로 기재 | | |
| | **소 속 ( 학 교 )** | 학교 과(부) 학년 | | |
| 본인은 2025년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에 지원 신청합니다.<br>2025 년 월 일<br>신청인(학생) (인) | | | | |
| **후원여부** | ※ 귀하 또는 가족이 광산장학회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후원한 내역이 있습니까?<br>☐ 그렇다 (202 년 월 일, 회 / 원)<br>☐ 그렇지 않다 | | | |

**[ 후원안내 ]**

o 장학금 기탁 의사가 있으신 분은 (재)광산장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.

o 사무국 주소 :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, 광산구청 6층

☎ 062)960-7926 / Fax 062)960-3715

**[ 후원방법 ]**

o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

※ 자세한 사항은 (재)광산장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

**[ 후원자 혜택 ]**

o 장학생 선발에 가점,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

※ 서류착오 제출(누락)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, 접수완료 후 보완서류는 받지 않음

**[별지 2] 학교 서식이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[우수장학생에 해당]**

# 장학금 수혜(비수혜) 확인서

대 학 :

학 과 :

학 년 :

학 번 :

성 명 :

(단위 : 원)

| 연도 | 학기 | 등록금 | 장학금 | | 실 납입금 | 수혜장학종류 | 지급기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학비감면 | 비학비감면 | | | |
| 2025 | 2 | 4,950,000 | 300,000<br>337,500 | <br><br>1,500,000 | 2,812,500 | 국가유형Ⅰ장학금<br>국가유형Ⅱ장학금<br>광산장학회 장학금 | 국가<br>국가<br>광산장학회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※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지원이며, 비학비감면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금임.

※ 장학금 수혜금액이 없을 경우 금액란에 "해당없음" 기재 바랍니다.

**위와 같이 장학금 수혜 사실을 증명합니다.**

**[ 확 인 자 ]**

소 속 :

성 명 : (서명/인)

연 락 처 :

oo대학교 학생처장 또는 총장 (직인)

**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**

**[별지 3] 학교 서식이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[특기장학생에 해당]**

# 학교장 추천서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자 | 성 명 | | 생년월일 | | |
| | 연락처 | * 연락가능번호 기재(부·모 연락처 기재) | | | |
| | 학 교 | 학교 | 학년 | 반 | |
| 특기사항 | 종 목 | 대회명 | 대회기간 | 주최기관/단체명 | 입상성적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**[ 유의사항 ]**

o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('24.8.25.~'25.8.25.) 개최한 대회에 한함

o 개인 부분 입상 성적 3위 이내인 자

o 2025년도 1월 ~ 8월 내 (재)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자 제외

**위 학생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.**

2025 년 월 일

**[ 확 인 자 ]**

소 속 :

성 명 : (서명/인)

연 락 처 :

학교장 (직인)

**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**

※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

**[별지 4]**

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동의서

**재단법인 광산장학회** 귀중

(재)광산장학회(이하'재단'이라함.)이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, 제17조,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금 이중수혜를 확인하거나,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, 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조회 및 국가, 관계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초·중·고등교육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, 그 밖의 공공기관(단체) 및 (재)미래에셋희망재단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**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** **(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 )**

| | |
|---|---|
| 수집·이용목적 | ■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장학대상자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 및 선발, 홈페이지 게시, 공지사항 안내 등을 위한 연락, 재단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활용 등 |
| 수집·이용할 항목 | ■ 개인식별정보<br>▸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학교, 학과, 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 등<br>■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<br>▸ 주민등록등·초본, 학자금 지원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<br>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. |
| 보유·이용 기간 | 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지원 종료 후에도 법령상의무이행, 민원처리, 재단 정관 제4조(사업)관련 필요한 경우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 |
| 수집·이용 동의 여부 |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|
|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|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|
|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| 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
**2. 제공·조회에 관한 사항** **(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 )**

| | |
|---|---|
| 제공·조회 대상기관 | 국가, 관계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초·중·고등교육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, 그 밖의 공공기관(단체) 및 (재)미래에셋희망재단 등으로,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|
| 제공·조회의 목적 | 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(재)미래에셋희망재단에 장학생 추천, 선발결과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,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활용,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, 법령상 의무이행 등 |
| 제공·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내용 | 수집·이용에 동의한 정보(개인식별정보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등)<br>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. |
|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| 위 개인정보는 제공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장학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 |
| 제공·조회 동의 여부 |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|
|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|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br>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 |
|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| 위 개인정보의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생 선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 |

2025 년 월 일

학 생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(미성년자의 경우) 보호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※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 모두 날인

**[별지 5] 우수장학생에 해당**

# 신청인 서약서

본인은 (재)광산장학회의 장학생 신청인으로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[이중지원의 범위]

| 구분 | | 종 류 |
|---|---|---|
| 중복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| | 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행정안전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<br>■ 법원행정처<br>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<br>■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<br>■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<br>■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<br>■「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<br>■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「평생교육법」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<br>■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br>■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br>■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|
| 학자금 종류 | 대출 | 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<br>-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(WEST 포함)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<br>■ 타기관 학자금<br>-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 |
| | 장학금 | 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<br>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.Ⅱ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대통령드림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<br>■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<br>-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|
| | 기타 학비 지원 | ■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<br>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|
| 중복지원 예외사항 | | ■ 근로장학금,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<br>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<br>■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|

2025 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